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안 번호	24-137
----------	--------

발의년월일: 2024. 10. .

발의자: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최은하

1. 개정이유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를 방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교제폭력”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조례안 전체 조문에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개정(안 제1조~제7조)

3. 관계법령

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10. 18. ~ 10. 24.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한다.

제2조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스토킹”을 각각 “스토

킹·교제폭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스토킹방지”를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스토킹”을 각각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스토킹방지”를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로 한다.

제7조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신 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스토킹·교제폭력-----</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 다음과 같다.</p> <p>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p> <p>2. “교제폭력”이란 <u>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u></p>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
----- 스토킹·교제폭력 -----

-----.

【관 계 법 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

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김성현
연 락 처	02-3153-8927